법무부 공고 제2024-497호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1734호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508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590호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공고(2차)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처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5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3일
법 무 부 장 관
행 정 안 전 부 장 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모델 발굴,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인구감소(관심)·농촌지역 연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육성

□ 사업내용

○ 인구감소(관심)지역과 농촌협약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 내 중소기업의 지역연고 분야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 2025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개요 >

구 분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과제내용	· 대상 기초지자체 내 중소기업의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지원	지원대상	· 인구감소(관심)지역 또는 농촌협약 기선정('21.~'24.) 지역
지원기업	· 지자체에서 설정한 육성 타겟군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수행주체	· 주관기관은 (재)테크노파크 일원화 하고 참여기관은 지역혁신기관 (대학, 연구소 등) 간 컨소시엄 가능
지원한도	· 과제별 국비기준 상이(국비7:지방비3) (지자체당 국비 연 900백만원 이내)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 (http://www.smtech.go.kr)
지원기간	· 23개월 (협약기간 '25.2.1. ~ '26.12.31.)	평가방법	· 협업부처 규모 및 계획타당성 등을 평가해 최종 선정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붙임1) 또는 농촌협약 기 선정 지자체 중 '26년까지 협약이 유지되는 지자체(붙임2)

□ **지원내용** : 지자체가 4개 부처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기업성장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응 지원

* 지자체는 지역상황에 따라 중기-행안, 중기-행안-법무, 중기-행안-농식품 등 선택

< (참고)부처별 협업 및 우대 내용 >

□ **(행안부)**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기업활동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중기부의 기업육성 프로그램과 협업

중기부(기업육성)	행안부(기금운용)	지자체(인프라)
• 제품제작, 마케팅 지원, 디자인 개선, 교육· 컨설팅 등 기업의 성장 지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시 혁신공모과제 수행 지자체 우대	•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프라(교육장, 시설) 등 지원

□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지역 기업에 외국인력을 공급하고, 해당 기업의 집중 성장 및 외국인채용 지원, 정주여건 개선을 협업

중기부(외국인 채용 기업지원)	법무부(비자운영)	지자체(정착지원)
• 외국인 고용기업에 기업 성장·외국인 특화 프로그램 지원	• 지역특화형 비자운영 및 선정 시 우대 * 지역별 비자 규모 할당	• 외국인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기숙사, 커뮤니티센터 등 각종 인프라 지원

□ **(농식품부)** 농식품부의 공간 재구조화 지원(H/W)과 중기부의 농촌기업 특화지원*(S/W), 농민·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협업

* 농촌 재구조화 계획에 따른 농촌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입주기업 중심 지원

중기부(농촌특화 기업지원)	농식품부(공간재구조)	지자체(정주여건)
• 농산물 임가공 관련 기업 특화지원	• 농촌협약 체결 시 우대	• 농민, 근로자 등 정주여건 개선

□ **지원규모** : 국비 3,952백만원, 신규 과제 6개 내외

* 국비 : 지방비 = 7 : 3 (지방비는 기초+광역이 매칭하고, 광역은 15% 이상 매칭 필수)

○ (지역지원계정) 6개 내외 과제, 3,952백만원(과제당 국비 최대 9억원)

* '25년 예산 국회 확정액에 따라 변동 가능

< 2025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지원규모 >

구분	과제 수	국비 예산 (과제당)	매칭비율 (지방비)
협업 프로젝트	6개 내외*	과제당 최대 900백만원	7:3 (광역은 총사업비의 15% 이상 매칭)

* 4개 부처 모두 협업 시 최대 900백만원이며 협업규모에 따라 국비 예산은 차등 지원

□ **수행주체**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역별 (재)테크노파크

○ 주관기관은 (재)테크노파크로 일원화하고, 참여기관은 지역혁신기관(대학, 연구소, 지자체출자출연법인 등) 간 컨소시엄하여 과제 추진 가능

□ **지원기간** : '25. 2. 1. ~ '26. 12. 31.

* 약 1년 지원 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3. 과제 세부내용

□ **기업지원 규모** : 기업당 연 최대 9천만원 지원

* 기업지원 최대 5천만원 10% 이내 기업 자부담(매출액 10억원 미만 5%, 10억원 이상 10%)

□ **기업지원 내용** : 지자체별 기업 및 산업현황 분석에 따른 사업화 프로그램 및 신규 연고자원 발굴을 하고 지원프로그램 추가 가능

※ 단, 주관기관은 K-TOP(붙임 5)을 활용하여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
(기업의 참여 의향서 등 첨부 필수, 실제 기업 선발시 K-TOP 활용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

❶ **(혁신화&성장촉진)** 주관기관에서 지자체의 성장을 위해 지역 내 연고산업 발굴 및 고도화 컨설팅, 유관기관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❷ **(사업화지원)** 기존 시제품제작, 마케팅 외 연고산업 관련 소비재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바이어 연계 및 거래처 확장 프로그램 신규 추진

❸ **(인식개선)** 육성타겟 기업군의 혁신역량 제고 및 트렌드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컨설팅, 기업의 애로사항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지원

❹ **(패키지지원)** 지역 내 유망기업 혹은 유망제품을 선정하여 사업화를 위한 기업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패키지 기획 및 지원

❺ **(생산성 향상)** 생산장비 개선, 고위험 장비의 DX 전환, 생산라인 효율화 등 안전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 도모
* 기업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50% 이상 기업 자부담

❻ **(외국인 인력채용)**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인력채용과 관련해 채용 및 정착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법무부 연계시 필수)
* 기업 당 최대 1천만원 10% 이상 기업 자부담(매출액 10억원 미만기업은 5% 이상)

□ 세부 지원프로그램

구분	세부 프로그램
혁신화& 성장촉진	ㅇ 기술 융복합(ICT, 플랫폼 기술 등) 및 제품·서비스 결합 기반 고부가가치화 컨설팅 ㅇ 지자체 연고산업 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간 네트워킹 운영
인식개선	ㅇ 혁신역량 및 기술트렌드 교육·컨설팅 ㅇ 애로사항 모니터링 및 관리
사업화 지원	ㅇ 전문가(코디네이터)에 의한 기술지도 및 기업 애로기술 해소 컨설팅 ㅇ 시험분석 및 인증·지재권획득 지원 ㅇ 시제품 제작, 장비활용 및 검증 지원 ㅇ 마케팅 지원(기업맞춤형 판매전략 수립, sns 홍보, 거래망 확보 등) ㅇ 디자인 개선 및 제품 고급화 ㅇ 해외 바이어 연계 및 해외 거래처 발굴 ㅇ 지역기업(제품) 수도권지역 백화점, 마트 등 팝업스토어 운영 지원
패 키 지	ㅇ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 * 컨설팅 → 제품개발 → 사업화 → 마케팅 등 맞춤형 기획·지원
생산성 향상	ㅇ 노후되었거나 안전장치가 미흡한 생산장비의 개선, 고위험 장비의 DX 전환, 생산라인 효율화 등
외국인 인력채용 프로그램	ㅇ 외국인 인력 채용을 위한 채용박람회 참가, 관련 플랫폼 사용 비용 ㅇ 지역특화형 비자신청 관련 행정 자문 ㅇ 정착을 위한 언어·문화 교육 지원 ㅇ 외국인 인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각종 지침·안내서 번역 지원 (프로그램 구성 시 필수)

* 지자체별 기업 및 산업현황 분석에 따라 인구감소 대응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추가 가능

□ 기업지원 절차

4.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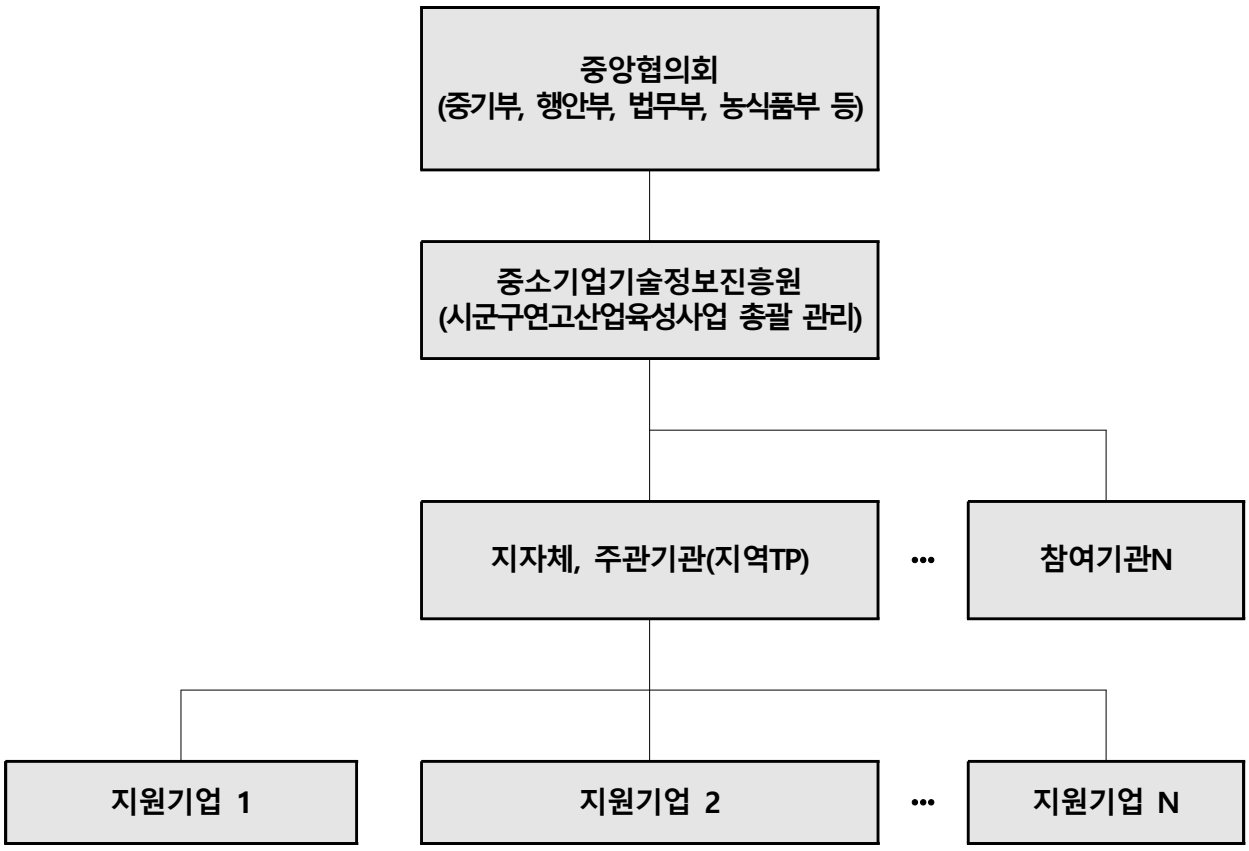

5. 추진절차 및 방법

□ 추진절차

절차	추진내용	수행주체	추진 일정
사업공고	· 2025년도 협업 프로젝트 공동공모 (추가)	중기부 → 지자체	'24.12
과제제출	· 신규협업과제 지자체 자율 기획 후 제출	지자체 → 중기부	'24.12
평가위원회 개최	· 제출된 과제에 대해 4개 부처 공동 평가위원회에서 과제 선정	4개 부처 공동	'24.12
최종선정 및 지역산업 진흥계획 반영	· 선정과제 통보(이의신청) · '25년 지역산업진흥계획 반영 * '25년 예산 국회 의결 후 최종 확정	중기부	'25.1
과제보완	· 평가위원회 보완의견 반영 및 구체화	지자체	'25.1
지원기업 모집공고	· 과제별 지원기업 모집공고	수행기관	'25.2
지원기업 선정 및 기업지원	· 지원기업 선정 및 기업지원	수행기관 → 지원기업	'25.3

□ **평가방법** : 발표평가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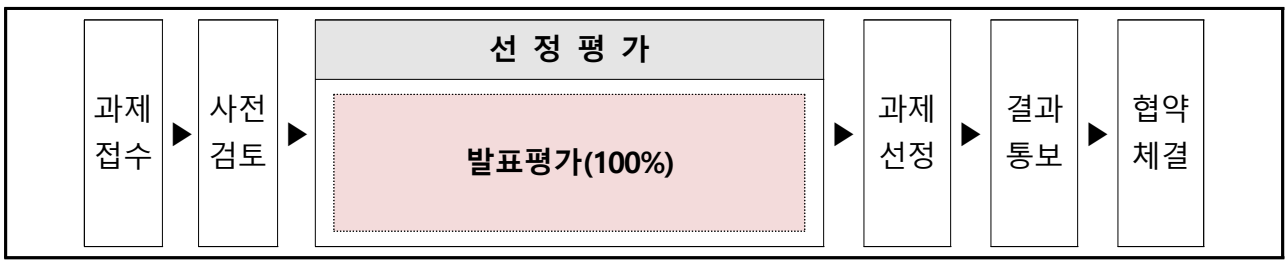

□ **평가기준** : 과제별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선정평가 지표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추진 필요성 (10)	▪ 현황진단 - 지역 여건 분석 및 진단의 적절성, 지역과의 연관성 등	5
	▪ 사업 필요성 - 협업프로젝트 추진의 필요성, 지자체 육성의지 등	5
중소기업 육성전략 (20)	▪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계획 및 목표, 실행전략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10
	▪ 조직운영·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 주체별 역할, 추진체계, 제반 인프라 현황의 적절성	10
중소기업 중심지원 (30)	▪ 지역 중소기업 지원효과 -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산업·일자리 개선효과 적절성 -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파급효과 적절성	15
	▪ 예산 투자계획의 적정성 - 지방소멸 대응계획과 지역 중소기업 간 육성전략의 연계타당성 -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투자계획의 적절성	15
부처협업 (30)	▪ 연계(협업)사업 적정성 - 연계사업 간 연계방안의 적절성	15
	▪ 연계(협업)사업 구체성 - 연계사업의 구체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제시의 적절성 등	15
지속가능성 (10)	▪ 공모사업의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 공모사업 이후 성과관리를 위한 체계의 적절성	10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4.12.3.(화) ~ 2024.12.20.(금)

○ 온라인 접수기간 : 2024.12.9.(월) 09:00 ~ 2024.12.20.(금) 18:00까지

* 온라인 서류제출(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smtech.go.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 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 이내 작성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방문 서류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출서류 등은 홈페이지(www.smtech.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 협업프로젝트 연계 모델 다변화 수요조사(붙임6)

ㅇ 현재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의 연계 모델에서 '법무부-행안부', '행안부-농식품부', '농식품부-행안부' 또는 '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 모델까지 다변화할 경우 참여 여부를 조사하고자 함

ㅇ 회수된 지역기업 수요조사서 결과를 정책수립 시 활용

7. 유의사항

□ 지원근거

법 령	관련 조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구 분	관련 규정
고 시 (SMTECH 참조)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23.7.17.)
	▸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23.9.1) - (직접지원 예산확대) 지원기업 직접지원비 비율 상향을 위해 간접지원 사업비 비율을 조정하고, 과제별 일괄기준 적용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함

○ 공고문 내용 미숙지 및 자료누락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선정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지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니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접수 및 문의처

□ 사업안내

구분	담당기관(부서)		연락처
시행계획 공고	사업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사업관리 총괄	전문 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	

붙임1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현황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현황 : 총 107개

○ (인구감소지역) 총 89개 지역

○ (관심지역) 총 18개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89개 지역)>

광역(11개)	기초지자체(89개)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관심지역 현황(18개 지역)

대전(동구, 중구, 대덕구), 부산(중구, 금정구), 광주(동구), 경남(통영시), 강원(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경북(경주시, 김천시), 경남(사천시) 전북(익산시), 인천(동구), 경기(동두천시, 포천시)

붙임2 농촌협약 개요

□ **(법적근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제16조

□ **(목적)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통합 지원**

* 농촌공간정비사업(난개발 정비), 농촌중심지활성화(복합서비스 거점시설 조성) 등 22개 사업

□ **(협약주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시장 · 군수

□ **(협약이행) 농림축산식품부**는 협약에 근거하여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시·군**은 **지방비**를 **편성**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의무를 이행

* 지자체당 국비 기준 최대 300억원+지방비, 민간투자 등(협약기간 : 5년)

□ **(참여조건)** 농촌공간계획 수립, 농촌협약 추진체계 구성·운영 등

< 농림축산식품부 연계 과제 지원 대상 지역 >

선정 연도 (지원 연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1 (22~26)	안성	평창	제천, 음성	금산, 청양	김제, 진안 무주	나주, 화순 장흥, 강진	군위*, 청도 고령, 봉화	고성, 산청 합천	
2022 (23~27)	여주	양양	청주, 진천	아산, 서산 부여, 예산	군산, 익산	순천, 구례 해남, 함평	영주, 칠곡 예천, 울진	함안, 창녕 거창	
2023 (24~28)	양평	정선	보은, 옥천, 단양	보령, 당진	남원, 고창 부안	영암, 영광	경주, 구미 영천, 의성 성주	창원, 진주 의령, 함양	제주
2024 (25~29)	가평	횡성	충주, 증평	천안	정읍, 완주, 장수	광양, 담양, 장성	포항, 김천, 안동, 경산, 청송, 영양, 영덕	사천, 하동	서귀포
계 <84개>	4	4	9	9	11	13	20	12	2

* 선정 당시 기준으로, 현재 대구광역시 군위군

□ **향후 추진 방향**

○ 국정과제 목표('31년 400개 생활권 정비)에 따라 농촌협약 시·군 지속 확대

○ 지자체 수요에 맞는 농촌협약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농촌 공간의 체계적인 개발·이용·보전을 위한 시·군 계획 이행 지원

붙임3 지역특화형비자 개요

□ **(목적) 인구감소지역**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 **주요내용**

○ **지역우수인재, 동포**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5년(동포는 2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을 조건**으로 **비자발급 및 지역정착 지원**

*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전년도 국민총소득 70% 이상 소득,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법질서 준수(범죄경력 등), 취업 확정 등

□ **추진경과**

○ **(시범시행) '22.10월부터 '23.10월까지**(1년간) **28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지정 및 지역우수인재 추천인원 **1,500명 배정**

○ **(정식시행) '24년 66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에 **지역우수인재 총 3,291명을 배정**('24.1월)

□ **추진절차**

○ **(법무부)** 지역특화형비자에 적합한 외국인 **기본요건을 설정**하고 지자체가 추천한 외국인에게 **비자발급 및 체류관리**

-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 등이 우수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를 선정**하여 지역특화형 **비자발급 추천권을 부여**(지역우수인재는 쿼터배정)

○ **(지자체)** 해당 지역에 정착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수요**를 **예측**하고 **발굴**하여 **법무부에 추천 및 외국인 정착지원***

* 지역주민 설득 및 이해 강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활용한 외국인의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교육,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외국인 정착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등

붙임4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지원대상) 총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

* (광역) 서울, 세종 제외 / ** (기초)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 **(규모/근거) 연 1조원**(기초75%, 광역25%), **10년간 지원**('22년~'31년)

* '22년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총 0.75조원 규모로 지원

□ **(운용방법) 기금관리조합**(17개 시·도로 구성)이 **관리·운용**하되, 기금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22.2월 배분기준 고시)

□ **(배분계획) 기초는**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 **광역은** 인구·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

* (감소지역) 최대 160억원 ~ 최소 72억원, (관심지역) 최대 40억원 ~ 최소 18억원

○ **(기초계정)** 자치단체가 수립한 **투자계획 평가*** 및 등급별 **차등 배분**

* 조합에서 위촉한 **평가단**이 수행(서면검토→대면평가→종합평가)

○ **(광역계정)** 평가 없이 **인구·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

<table>
<tr><td rowspan="3">지방소멸
대응기금
(연 1조)</td><td rowspan="2">기초계정
(75%, 7,500억)</td><td>인구감소지역 89개
(95%, 7,125억)</td><td rowspan="2">▸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차등 배분
⇨ 성과 지향적 운용</td></tr>
<tr><td>관심지역 18개
(5%, 375억)</td></tr>
<tr><td rowspan="2">광역계정
(25%, 2,500억)</td><td>인구감소지수,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
(1,500억원)</td><td>▸산식에 따라 정액 배분
⇨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운용</td></tr>
<tr><td>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자(1,000억원)</td><td>▸대규모 펀드사업 추진 지원</td></tr>
</table>

붙임5 AI기반 기술평가 오픈 플랫폼(K-TOP) 개요

□ **(개요)** 기보의 AI기반 기술평가 핵심 서비스를 탑재한 개방형 플랫폼

○ 명칭: 기보 기술평가 오픈 플랫폼, K-TOP(KIBO Technology-rating Open Platform)

○ 각 기술평가 콘텐츠를 통하여 **자가진단 결과, 평가등급 및 지수**를 **제공**하고, **기업 평가정보를 검색·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

□ **(주요 콘텐츠)**

기술평가 콘텐츠	콘텐츠 개요 및 입력정보	
기업혁신역량지수 (Tech-Index)	개요	○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역량**을 의미하는 객관적인 **지수**로서, 기업이 보유한 **혁신역량** 및 **미래성장가능성** 등의 정보 제공
	입력 정보	- 10가지 기업 정량정보(동업종 경력, 기술개발·지재권 실적 등) - 일부 재무정보(급여, 개발비 등)

□ **(활용방안)**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신속한 **기업선별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 혁신활동 분석** 및 **시계열 추적관리, 산업군별 분석** 등 다양한 기능 제공

○ **(산출방식) 4대 혁신활동영역**(인프라, 투입, 활동, 성과) 측면에서 각 점수 도출 후 **고성장 및 지속가능성장 관점**에서 최종 복합지수 산출

* 신청기술이 아닌 **기업단위의 일관된 시계열 측정**이 가능함에 따라 지수로 활용 가능

○ **(특·장점) 객관적 빅데이터에 기반한 모형방식**의 지수 산출구조로 통계지수로서의 **신뢰성 강화**

*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제조업가동율지수, 중소기업건강도지수 등

붙임6 협업프로젝트 연계 모델 다변화 수요조사

※ 회수된 지역기업 수요조사서 결과는 정책수립 시 활용

<table>
<tr><td colspan="5">00 테크노파크 00부서, 담당자 000 (연락처)</td></tr>
<tr><td>광역시·도</td><td colspan="2">○○광역시 / ○○도</td><td>기초지자체</td><td>○○○시/군/구
(유형1, 유형2, 유형3)</td></tr>
<tr><td>관련
부서명</td><td colspan="4">○○과, ○○과, ○○과</td></tr>
<tr><td colspan="5">질문1 : 현재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의 연계 모델에서 '법무부-행안부', '행안부-농식품부', '농식품부-행안부' 또는 '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 모델까지 다변화할 경우 참여 여부

※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연계 가능 모델
① (2개 부처) 중기부-법무부, 중기부-행안부, 중기부-농식품부
② (3개 부처) 중기부-법무부-행안부, 중기부-행안부-농식품부, 중기부-농식품부-법무부
③ (4개 부처)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td></tr>
<tr><td>사업수요
(중복체크 가능)</td><td>☐ 법무부-행안부</td><td>☐ 행안부-농식품부</td><td>☐ 농식품부-법무부</td><td>☐ 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td></tr>
<tr><td colspan="5">질문2 : 다변화된 협업 모델에 대한 참여 수요가 있다면, 지역 내 관련 참여 예정 기업의 수요</td></tr>
<tr><td>중복응답 가능</td><td>☐ 제조업
(00개사)</td><td>☐ 비제조업
(00개사)</td><td>☐ 기타
(00개사)</td><td>* 기타 내용 상세 기재( )</td></tr>
<tr><td colspan="5">질문3 : 다변화된 협업 모델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안</td></tr>
<tr><td>답변</td><td colspan="4">제목 :
주요내용 : (간략히)</td></tr>
<tr><td colspan="5">질문4 :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중앙정부 사업에 연계 가능한 기초지자체 자체 사업 여부</td></tr>
<tr><td>여부
(☐, ☑)</td><td colspan="3">☐ 있다(행안부 연계 / 법무부 연계 / 농식품부 연계)</td><td>☐ 없다</td></tr>
<tr><td></td><td colspan="4">① 사업명 :
- 사업기간 :
- 시행주체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td></tr>
<tr><td colspan="5">질문5 : 협업 과제 추진시 중앙부처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을 바라는 점</td></tr>
<tr><td>답변</td><td colspan="4"></td></tr>
</table>